

2020년도 제2차  
**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**

위원정수	9인	재적위원수	9인
------	----	-------	----

1. 일 시 : 2020.1.30.(목) 11시 30분
2. 장 소 : 대구예술대학교 제1예술관 2층 회의실
3. 위원 출석현황

구분	참석	불참석	참석위원	불참위원
위원	7명	2명	조용일, 이명균, 전도희, 김관식, 손은혜, 이수경, 이준엽	이혁화, 이희경

4. 안건

- 제1호의 안 :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
- 제2호의 안 : 2020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(안)
- 제3호의 안 : 2020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(안)
- 제4호의 안 : 2020회계연도 본 예산(안)

5. 회의내용

가. 개회

- '간사'가 재적위원 중 7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.
- '위원장'이 2020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안건 심의

제1호의 안 :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

- 제안설명

- '위원장'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며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- '간사'가 잉여금 활용을 중심으로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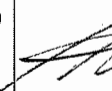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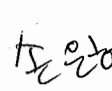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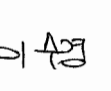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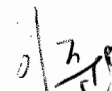
- 토론 및 토론 종결

- '전도희'위원이 잉여금 처리 원칙은 매년 하는 것이고 내용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있지 않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안을 낸다고 하다.
- '위원장'이 '전도희'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제2호의 안 : 2020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(안)

- 제안설명

- '위원장'이 제2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- '간사'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부담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, 2019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88,0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이 10,000천원이었으며, 2020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42,8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은 10,000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다.

서명							
----	---	---	---	---	--	---	---

- 토론 및 토론 종결

- '전도회'위원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에서 가결산을 하면서 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승인받았고, 이번에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천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원으로 한다고 하니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안을 낸다고 하다.
- '위원장'이 '전도회'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□ 제3호의 안 : 2020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(안)

- 제안설명

- '위원장'이 제3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- '간사'가 해당 안건은 매년 교육부장관 공고가 되고 있는 사안이며 올해의 등록금 인상을 법정 상한은 1.95% 이하라서 본교도 그만큼 인상을 할 수 있지만 대구경북권 대학이 모두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교에서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지만 동결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하다. 입학금 책정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학부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해마다 20%씩, 금액으로는 130,000원씩 감축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260,000원이라고 하다.

- 토론 및 토론 종결

- '조용일'위원이 본교가 몇 년간 등록금이 동결이였는지 문의하다.
- '간사'가 근 10년간 인상, 인하가 1번씩 있었다고 하다.
- '조용일'위원이 만일 등록금을 1%정도 인상을 한다면 인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다.
- '간사'가 등록금을 1% 인상 할 경우 연간 약 73,000,000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다.
- '위원장'이 예산상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나 지역의 다른 대학들이 동결하고 있고, 교육부에서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등 제반사항이 적당하지 않아 대학본부에서도 동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하다.
- '이명균'위원이 입학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, 등록금 역시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 동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.
- '위원장'이 입학금은 130,000원 감축하고 등록금은 동결하자는 원안에 대해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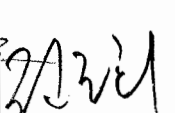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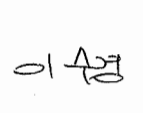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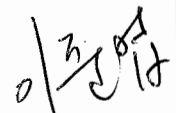
□ 제4호의 안 : 2020회계연도 본 예산(안)

- 제안설명

- '위원장'이 제4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- '간사'가 2020회계연도 본 예산(안)의 수입이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의 감소로 작년대비 감소하여 수입총계가 12,548,294,919원이고 이중에서 등록금회계가 8,017,689,744원, 비등록금회계가 4,530,605,175원이라고 하며, 지출은 감소된 수입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며 세부내역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.

- 토론 및 토론 종결

- '전도회'위원이 등록금수입이 약 80억인데 이 금액으로는 1년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무리로 보이며 이월금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 입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, 내년에도 입시가 올해 정도라면 더 심각한 예산부족이 예상되는만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다.
- '전도회'위원이 원안에 대한 동의안을 낸다고 하다.

서 명							
--------	---	---	---	---	--	---	---

- '위원장'이 위원들에게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'전도희'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.

6. 의결사항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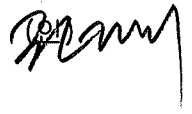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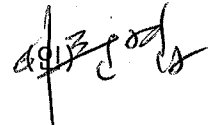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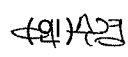
- 제1호의 안 :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은 원안대로 의결하다.
- 제2호의 안 :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10,000천원이고 그 외 사학연금부담금은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하다.
- 제3호의 안 : 입학금은 260,000원으로, 수업료는 작년과 같이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다.
- 제4호의 안 : 2020회계연도 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다.

7. 폐회선언

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2020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[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.]

2020. 01. 30.

참석인원	위원장	김관식		위원	전도희	
	위원	조용일	<del>(인)</del> 	위원	손은혜	
	위원	이명균	(인) 	위원	이준엽	
				위원	이수경	
				작성자	김광진	